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개정연혁

- 2008년 11월 28일 제정
- 2012년 7월 11일 개정
- 2012년 11월 27일 개정
- 2016년 6월 22일 전면개정
- 2020년 10월 22일 개정
- 2020년 11월 24일 개정
- 2024년 11월 1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함) 회장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또는 협회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11. 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2. 피선거권이라 함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인 선거인이라 함은 협회 정관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선수, 지도자 및 심판을 말한다.

제4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4.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12.>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4. 11. 12.>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협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 및 협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정당의 당원
3. 제14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신설 2024. 11. 12.>

④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신설 2024. 11. 12.>

⑤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2.>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협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개정 2024. 11. 12.>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은 제외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2.>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4. 11. 12.>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제7조(선거일)

① 선거일은 회장 임기만료일전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단 그 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20. 10. 22.>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2.>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2.>

④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⑤ 협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①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2.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1인(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고등 및 대학리그 등록팀 선수 5인 <개정 2020. 10. 22.>
4. K3, K4 및 WK리그 등록팀 선수 10인 <개정 2020. 10. 22.>
5. K리그1, K리그2 등록팀 선수 28인 <개정 2020. 10. 22.>
6. 축구동호인 선수 20인
7. 12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8. 15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9. 18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10. 대학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6인
11. K3, K4, WK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9인 <개정 2020. 10. 22.>
12. K리그1, K리그2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15인 <개정 2020. 10. 22.>
13. 1급, 2급, 3급 4급, 및 5급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에 등록한 심판 8인
<개정 2024. 11. 12.>
14. 선거가 있는 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대회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및 아시아축구 연맹·국제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

판 7인

15. 선거인이 제1항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신설 2024. 11. 12.>

16. 제15호에 따라 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체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추천 대상자 기준일에 만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10. 22.>

1. 협회로부터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자격정지 집행중인 자
2. 협회로부터 제명된 자

④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시도협회나 전국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시도협회나 전국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협회 또는 전국연맹의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10. 22.>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협회 회장 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신설 2020. 10. 22.>

⑥ 후보자, 협회의 임원 및 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10. 22.> <개정 2024. 11. 12.>

⑦ 위원회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

한 동의(이하 “개인정보 동의”라 한다)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추천 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2.>

제9조(임원 등 명단 제출)

① 협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에서는 선거인 추천을 위하여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 등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단체별 임원 등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 등에 대한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10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14호에 따라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천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이 두 개 이상의 직군에서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선거인이 되는지를 결정하며, 재추첨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 11. 12.>

제1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인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라 한다)를 선거인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⑥ 후보자는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 11. 12.>

제12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열람기간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 등”이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제기 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3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3조(후보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 10. 22.>
2. 정관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20. 10. 22.>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0. 22.>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신설 2020. 10. 22.>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협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종목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FIFA, AFC 및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ast Asian Football Federation)이 주최하는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0. 10. 22.>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11. 12.>

⑦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협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0. 10. 22.> <개정 2024. 11. 12.>

⑨ 협회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20. 10. 22.>

⑩ 위원회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2.>

제14조(기탁금 납부절차)

후보자는 위원회가 정한 협회 명의를 금융기관의 계좌에 정관 제23조 제2항에서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입후보 시 그 입금표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

다. <개정 2024. 11. 12.>

제15조(후보자등록기간)

①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3일간 위원회에 제16조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3.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5. 제13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제7항과 제8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7.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개정 2020. 10. 22.>
8. 기탁금 또는 기탁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0.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개정 2024. 11. 12.>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12.>

제17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개정 2024. 11. 12.>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개정 2024. 11. 12.>

③ 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④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사무처를 방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2.>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2.>

제4장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개정 2024. 11. 12.>

제1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1. 12.>

제20조(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및 제한) ①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선거사무원(이하‘선거사무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2.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4.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5.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6.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다만, 후보자가 개최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7.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다만,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8.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③ 선거사무원등은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등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21조(금지행위 등)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2.>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신설 2024. 11. 12.>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12.>

④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다만,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제22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①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

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2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2.>

제24조(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제23조의 조치에 대한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서면에 의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
2.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
3.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

<본조신설 2024. 11. 12.>

제5장 투·개표 및 당선 결정

제25조(선거방법)

-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투표는 선거인 1인에 1표로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투표소의 설치 등)

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 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8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2.>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제2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30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일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 회)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31조(기탁금의 처리)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② 협회는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③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32조(회장 당선인의 결정방법 및 결정)

① 선거의 개표가 종료된 때에는 위원회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2020. 10. 22.> <개정 2024. 11. 12.>

②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1. 12.>

제33조(회장 당선인 공고)

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 및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2.> <개정 2024. 11. 12.>

제34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5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제36조(선거 또는 당선인의 효력 심의·의결)

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1. 12.>

제37조(투표록의 작성)

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8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이나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개정 2024. 11. 12.>

제39조(보궐선거)

-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2.>
-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0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어 협회가 통지받은 날
2. 회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본조신설 2024. 11. 12.>

제41조(벌칙) 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42조(그 밖의 사항)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2.>

제43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4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부 칙(2016.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 제정 전에 존재한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 규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이후 실시되는 첫 회장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 시기,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일, 회장 선거 공고일, 선거인 명부 작성일,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기간 및 선거 관련 판단 기준일을 단축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축구동호인 선수에 대한 특칙)

- ① 제6조 제2항 제6호의 축구동호인 등록팀 선수라 함은 2016. 1. 1.부터 추첨 대상자 기준일까지 협회 주최 전국대회 및 17개 시도연합회 또는 16개 시도축구협회 주최 대회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 ② 위 제1항은 2016년 회장 선거에만 적용한다.

제4조(2016년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

① 2016에 실시되는 제53대 대한축구협회자아 선거의 선거인단은 제6조에 의하지 않고 본 조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 규정 제7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선거인 후보자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1.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2. 각 시도축구협회 또는 시도연합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1인
3. 대학리그 등록팀 선수 3인
4. K3리그 등록팀 선수 2인

5. K2(실업축구연맹)리그 등록팀 선수 2인
6. WK리그 등록팀 선수 2인
7. 프로 1부(클래식) 및 2부(챌린지) 리그 등록팀 선수 9인
8. 축구동호인 선수 6인
9. 12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0. 15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1. 18세 이하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2. 대학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4인
13. K3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4. K2(실업축구연맹)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5. WK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2인
16. 프로 1부(클래식)리그 및 2부(챌린지)리그 등록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는 지도자 8인
17. 1급, 2급, 3급 및 4급 자격증 소지자로 협회에 등록된 심판 2인
18. 선거가 있는 해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대회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및 아시아축구연맹·국제축구연맹 주최 대회에 배정된 사실이 있는 심판 3인

② 위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을 추천해야 하는 시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회에 추천해야 한다.

1. 2016년 통합 시도협회장 선거에서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결의 당시 시도축구협회장이었던 자가 선출된 경우, 해산결의 당시 시도연합회의 임원이었던 자
2. 2016년 통합 시도협회장 선거에서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결의 당시 시도연합회장이었던 자가 선출된 경우,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결의 당시 시도협회의 임원이었던 자
3. 2016년 통합 시도협회장 선거에서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결의 당시 시도협회장 및 시도연합회장이 아니었던 자가 선출된 경우, 2016. 1. 13. 전국축구연합회 해산결의 당시 시도협회와 시도연합회별 추천된 임원 각 5인을 재추천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 자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협회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5인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각 시도협회 별로 1인을 본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인을 선정하여 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선거인수 배정의 제한)

이 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구)시도축구협회와 (구)시도연합회가 양 단체를 통합하여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거나, 통합을 하여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체육회의 권고 또는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규정 등에 따른 회장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단체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 구성원의 비율을 증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20. 11. 1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①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회장선거의 경우, 협회 자체 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②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회장선거의 경우, 제6조 제1항 제14호 “선거가 있는 해”에 “2020년도”를 포함한다.

부칙 (2020. 12. 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조정 및 의결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24. 11. 1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제○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선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군,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인 명부* 작성(추첨을 통해 선거인으로 선정 시) * 투표 시 본인 확인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 이메일)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되고,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회장선거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되고,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축구협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대한축구협회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대한축구협회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축구협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승부조작 <input type="checkbox"/> 편파판정 <input type="checkbox"/> 폭력·성폭력 <input type="checkbox"/> 횡령 <input type="checkbox"/> 배임 <input type="checkbox"/> 직권남용 <input type="checkbox"/> 직무태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input type="checkbox"/> 선수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input type="checkbox"/> 지도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input type="checkbox"/> 심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input type="checkbox"/> 임원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input type="checkbox"/> 직원 ☞ <input type="checkbox"/> 파면 / <input type="checkbox"/> 해임 / <input type="checkbox"/> 강등 / <input type="checkbox"/> 정직(기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 등() ☞ <input type="checkbox"/> 제명 / <input type="checkbox"/> 자격정지(기간:)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축구협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회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위법·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대한축구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회 장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사퇴사유:

위 본인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상기 사유에 따라 후보자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중지)·(경고)·(시정명령) 통지서

1. 처 분 대 상:
2. (중지)·(경고)·(시정명령) 내용: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귀하가 제O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하였기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지)·(경고)·(시정명령) 처분하오니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통보서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000)이 제0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문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000)이 제0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
2. 참관인

투표소명 개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업	비고

년 월 일 실시한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투표)·(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 주: 1. 신고서에 "투표·개표" 참관 사항을 표기합니다.
2. 교체신고 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본인승낙서

1. 소 속:
2. 직위(직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화번호:

년 월 일 실시한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 ○ ○ (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p>년 월 일 실시한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의제기자 ○ ○ ○ (서명)</p> <p>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p>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